

- 2022학년도 제17차 -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2023. 1. 19.(목), 14:10

〈심의 안건〉

1. 「위임전결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평생교육원)
2.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사이버평생교육원)
3. 「장학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학생복지팀)
4. 「교내장학금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학생복지팀)
5. 「원격수업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원격교육지원센터)
6. 「대학원 학칙」, 「직제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대학원교학팀)
7.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대학원 교학팀)
8. 「우석대학교 학칙」, 「직제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기획예산팀, 교무학사팀, 역량개발인증센터)
9.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학사관리팀)
10. 「선이수프로그램학점제운영규정」 제정 건(학사관리팀)
11.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기획예산팀)
12.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기획예산팀,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13. 행정조직 개편(2023.01.01.)에 따른 관련 규정 일괄 개정(안)에 관한 건(업무분장규정 외)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3-1-3 「위임전결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평생교육원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평생교육원에 처장이 임명되어 있지 않고, 평생교육원규정 제5조에 의거 평생교육원의 직제는 담당-팀장-평생교육원장-총장으로 이루어지는 바 전결권자에서 처장이 필요치 않기에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위임전결규정 중 평생교육원의 단위업무 중 문서처리업무에 구분되어 있는 세부업무의 경우 기준이 모호함. • 또한 평생교육원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관련 세부업무별로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결재가 진행되어 실제 적용에 있어 다른 단위업무의 세부업무와 중복되고 있어 문서처리 단위업무를 폐지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직제규정 제10조(부속교육기관)~, 각 부속교육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평생교육원규정 제5조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제10조(전결사항) [별표2] 개정 - 전결권자에 팀장, 원장만 표기 - 문서처리 단위업무 폐지		
기대효과	• 위임전결규정의 세부업무별 명확한 전결권자 적용 가능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치 등] 「직제규정」, 「학칙」은 기획평가팀 주관 개최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1.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2023.00.00.)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원장	팀장
1. 직인관리	직인 관리 및 사용				○
2. 문서처리(삭제)	중요문서		○		
	일반문서			○	
	경미한 문서				○
3. 계획수립	평생교육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강좌개설 및 폐지	강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운영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수강료 및 강사료 결정 사항	○			
	강좌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강좌관리 및 운영	강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			○	
	국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강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강사 초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7. 홍보	모집요강 제작			○	
	홍보물 제작계획 수립			○	
	홍보물 배포			○	

개 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원장	팀장
1. 직인관리	직인 관리 및 사용			○
2. 계획수립	평생교육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강좌개설 및 폐지	강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운영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수강료 및 강사료 결정 사항	○		
	강좌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강좌관리 및 운영	강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		○	
	국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강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강사 초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6. 홍보	모집요강 제작		○	
	홍보물 제작계획 수립		○	
	홍보물 배포		○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3-1-2 「업무분장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사이버평생교육원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사이버평생교육원의 업무분장규정이 누락되어있어 제정을 요청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3-1-2 업무분장규정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사이버평생교육원 업무분장 신설		
기대효과	사이버평생교육원의 정확한 업무분장 지정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 「직제규정」, 「학칙」은 기획평가팀 주관 개최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 없음	
첨부자료	1. 업무분장규정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u>(조 신설)</u>	제36조2(사이버평생교육원) 사이버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이버평생교육원 직인 관리에 관한 업무 2. 사이버평생교육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3.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수강료 책정 및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 5.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6. 학점은행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평가인정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 9.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u>(신설)</u>	부 칙 <u>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3-1-3 「위임전결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사이버평생교육원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회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사이버평생교육원의 위임전결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신설을 요청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사이버평생교육원의 위임전결규정 신설		
기대효과	사이버평생교육원의 정확한 위임전결 지정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직제규정」, 「학칙」은 기획평가팀 주관 개최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 없음	
첨부자료	1. 위임전결규정 제·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u>별표2</u> 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u>별표2</u> 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u>(신설)</u>	[별표2]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원장 팀장	
	1. 직인관리	직인 관리 및 사용			○
	2. 계획수립	사이버평생교육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운영	사이버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수강료 및 강사료 결정 사항	○		
	4. 학점은행제 관리 및 운영	학점은행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학습자 모집 및 등록 관리		○	
		학습자 사전보고 및 학사관리		○	
		학습자 성적관리 및 성적보고		○	
		수강생 사후 관리			○
	5. 평가인정	평가인정 계획 수립	○		
		평가인정신청 관리		○	
		콘텐츠 개발 및 관리		○	
	6. 홍보	홍보물 제작계획 수립		○	
		홍보물 배포		○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4-1-7 「장학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생복지팀	관련부서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을 명문화하고자 함 • 장학금 통계조사 지침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지급한 학비감면 교내장학금’에 대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명시된 자료를 원칙으로 하고자 함 • 교내장학금시행규칙 제10조(우석희망장학금) 제4항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변경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제2항 ②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유형 성적 심사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명문화(제5조(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되는 액수가 총감면금액의 30퍼센트 이상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지급한 학비감면 교내장학금의 지원구간 명시(제5조(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 학자금 지원구간이 0~8구간 • 국가장학금 성적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최종학기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을 취득 적용 제외 장학금 확대(제8조(장학금수혜자격)) - ‘우석희망장학금D’에서 ‘우석희망장학금A,B,C,D’로 확대		
기대효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화 • 내부결재 문서를 규정에 명시하여 규정 정비 • 한국장학재단 성적 심사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학생에게 동일한 정보 제공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사 등 「직제규정」, 「학칙」은 기획평가팀 주관 개최〕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없음	
첨부자료	1. 「장학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장학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u>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내 장학금 시행규칙에 의한다.</u>	제5조(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① <u>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범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이 0~8구간으로 정한다.</u> ② <u>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내장학금 시행규칙에 의한다.</u> [전문개정 2022.00.00.]
제8조(장학금수혜자격)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5.2.27., 2016.1.8) 1.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기존 삭제 2013.8.13., 호 신설 2015.2.27.)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최종학기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u>우석희망 장학금D</u> , 우석드림장학금, 취업역량개발장학금, 우석챔프장학금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기존 삭제 2013.8.13., 호 신설 2015.2.27., 개정 2016.1.8., 2020.1.16.) (생략)	제8조(장학금수혜자격)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5.2.27., 2016.1.8) 1. (현행과 같음)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최종학기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u>우석희망 장학금A,B,C,D</u> , 우석드림장학금, 취업역량개발장학금, 우석챔프장학금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기존 삭제 2013.8.13., 호 신설 2015.2.27., 개정 2016.1.8., 2020.1.16., 개정 2023.00.00.) (생략)
<u>(신설)</u>	<u>부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4-1-7-규칙1 「교내장학금시행규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생복지팀	관련부서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한국장학재단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일치 • 학교에 우석희망장학금(A,B,C)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을 연계하여 신청 방법 간소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범위와 동일하게 우석나눔장학금 수혜자 소득구간 확대 • 신입생 입학자원 확보 및 교직원들의 후생 복지향상을 위해 교육지원 확대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한국장학재단과 일치(제10조(우석희망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을 연계하여 학생 신청서 제출 절차 생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지원구간을 연계하여 우석희망장학금A,B,C 사전감면 • 국가장학금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 명시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와 수혜 횟수 초과로 지급받지 못한 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용어 일치 - ‘소득분위’ 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으로 변경 • 우석나눔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확대 (제10조의2(우석나눔장학금)) - ‘1구간~5구간’ 에서 ‘1구간~8구간’ 으로 확대 • 교직원장학금 수혜자 수 확대 (제16조(교직원장학금)) -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여 한 가족당 3명’ 을 삭제		
기대효과	• 등록금 사전감면을 통한 등록률 향상 • 신청서 제출 절차 생략을 통한 신청 방법 간소화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우석나눔장학금 확대 • 신입생 입학자원 확보 및 교직원들의 후생 복지향상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표 등 「직제규정」, 「학칙」은 기획평가팀 주관 개최)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없음	
첨부자료	「교내장학금시행규칙」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교내장학금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우석희망장학금) ①복지시설 출신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업료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우석희망장학금A : 보육원 등 복지시설 출신자 2. 우석희망장학금B : 기초생활수급자 3. 우석희망장학금C : <u>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중에서 차상위계층이 있는 자</u> 4. 우석희망장학금D :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② <삭제 2013.2.1.> ③ <삭제 2013.2.1.>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장학금은 <u>직전학기 성적이 80/1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가장학금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u>	제10조(우석희망장학금) ①복지시설 출신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업료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우석희망장학금C : <u>차상위계층 (개정 2023.00.00.)</u> 4. 우석희망장학금D :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장학금은 <u>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와 수혜 횟수 초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개정 2023.00.00.)</u>
제10조의2(우석나눔장학금) 신(편)입생과 직전학기 성적이 80/10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부모 또는 학생의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되고, <u>장학재단 소득분위 1분위~5분위에</u>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장학금 상당액을 제외하고 수업료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의2(우석나눔장학금) 신(편)입생과 직전학기 성적이 80/10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부모 또는 학생의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되고, <u>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8구간에</u>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장학금 상당액을 제외하고 수업료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00.00.)
제16조(교직원장학금) ①본교 교직원(비전임교원 및 기간제 계약직원 제외,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그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본인 : 등록금의 50% 감면 2. 배우자 또는 자녀 : 등록금 전액 감면 ②본교 교직원이 정년·중간퇴직 하는 경우에는	제16조(교직원장학금) ①~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다음과 같이 재직기간 동안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본교에 재학 중인 직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수업연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1. 10년 이상 15년 미만 : 수업료의 60% 감면 2. 15년 이상 20년 미만 : 수업료의 80% 감면 3. 20년 이상 또는 정년퇴직자 : 수업료의 100% 감면 ③본교 교직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직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수업연한까지 수업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④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80/100점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u>장학금 수혜자 수는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여 한 가족당 3명을 초과할 수 없다.</u>	⑤ <u><삭제 2023.00.00.></u>
(신설)	<u>부칙</u> <u>이 시행규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2-1-18 「원격수업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원격수업운영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학점인정 제한) ①전공교과목 중 원격수업<u>으로 개설하는 학점 수는</u>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교과목 총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3.17.) ②교양교과목 중 원격수업으로 개설하는 학점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개설된 교양교과목 총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3.17.) ③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하며,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로 취득한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도 포함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3.17.) ④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본교 소속 학생은 본교 및 외국대학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각 학점 수의 20% 이내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인정하고, 외국대학 소속 학생은 본교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 수의 20% 이내에서 인정한다. <u>(단서 신설)</u> ⑤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의 20% 이내에서 원격수업교과목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⑥<삭제 2022.3.17.> ⑦<삭제 2022.3.17.>	제9조(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학점인정 제한) ①전공교과목 중 원격수업 <u>교과목 수는</u>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u>의 개설된 총 교과목</u>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 <u>온라인 학위과정 전공</u>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②교양교과목 중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개설된 교양교과목 총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 <u>온라인 학위과정 전공</u>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③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하며,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로 취득한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도 포함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 <u>온라인 학위과정 전공</u>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④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본교 소속 학생은 본교 및 외국대학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각 학점 수의 20% 이내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인정하고, 외국대학 소속 학생은 본교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 수의 20% 이내에서 인정한다. <u>단, 온라인 학위과정 전공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u> ⑤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의 20% 이내에서 원격수업교과목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u>단, 온라인 학위과정 전공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u> ⑥<삭제 2022.3.17.> ⑦<삭제 2022.3.17.>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5-1-1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교육대학원 인공지능전공은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신설된 학과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전공명이 ‘인공지능융합교육전공’ 이므로 타 대학과 동일하게 전공명을 변경하고 현 재학생부터 적용하고자 함 • 일반대학원 스포츠복지교육학과는 스포츠복지 및 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도 스포츠복지 관련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의 ‘체육학 학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변경된 학위명을 적용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전공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학 과	전 공	학 과	전 공	
	교육학과	인공지능	교육학과	인공지능융합교육	
	• 제39조(학위수여) [별표 2] 학위종별 개정				
	- 일반대학원 스포츠복지교육학과 학위종별 변경				
	학과	변경 전		변경 후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석사	교육학석사	석사	체육학석사
		박사	교육학박사	박사	체육학박사
- 교육대학원 인공지능전공 학위종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학과	전공	학 위 종 별	학과	전공	학 위 종 별
교육학과	인공지능	교육학(인공지능)석사	교육학과	인공지능융합교육	교육학(인공지능융합교육)석사

기대효과	• 대학원 신입생 충원을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사 등 「직제규정」, 「학칙」은 기획평가팀 주관 개최)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진행 예정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진행 예정
첨부자료	1.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대학원위원회 회의자료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00.00.)
제39조(학위수여) ①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와 학위청구논문대체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변경 2003.4.30., 2003.6.4) (개정 2006.11.6., 2014.11.27., 2017.3.31., 2018.4.6.)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종별은 별표2 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6호)로써 행한다. (개정 2008.6.5, 2010.3.3,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6., 2018.6.25.,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2.4.14., 2022.9.30., 2022.12.16.) ③각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3.31.) (개정 2018.4.6.) ④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학위수여) ① 현행과 같음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종별은 별표2 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6호)로써 행한다. (개정 2008.6.5, 2010.3.3,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6., 2018.6.25.,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00.00.)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2. 교육대학원 - 전주캠퍼스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2. 교육대학원 - 전주캠퍼스		
학 과	전 공	입학 정원	학 과	전 공	입학 정원
교육학과	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u>인공지능</u>	60명	교육학과	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u>인공지능융합교육</u>	60명
계	9개 전공	60명	계	9개 전공	60명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 2】 학 위 종 별				【별표 2】 학 위 종 별			
1. 일반대학원				1. 일반대학원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석 사	박 사			석 사	박 사
인문 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박 사	인문 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유 아 특 수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		유 아 특 수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심 리 운 동 학 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심 리 운 동 학 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글로벌외식경영학과	-	경 영 학 박 사		글로벌외식경영학과	-	경 영 학 박 사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박 사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박 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	사회적경제학박사 경 영 학 박 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	사회적경제학박사 경 영 학 박 사
	소 방 방 제 학 과	소방방제학석사	소방방제학박사		소 방 방 제 학 과	소방방제학석사	소방방제학박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국 제 교 육 문 화 학 과	-	교 육 학 박 사 문 학 박 사		국 제 교 육 문 화 학 과	-	교 육 학 박 사 문 학 박 사
	예 술 경 영 학 과	예술경영학석사			예 술 경 영 학 과	예술경영학석사	
2. 교육대학원				2. 교육대학원			
학 과	전 공	학 위 종 별		학 과	전 공	학 위 종 별	
교육학과	특 수 교 육	교육학(특수교육)석사		교육학과	특 수 교 육	교육학(특수교육)석사	
	국 어 교 육	교육학(국어교육)석사			국 어 교 육	교육학(국어교육)석사	
	수 학 교 육	교육학(수학교육)석사			수 학 교 육	교육학(수학교육)석사	
	영 어 교 육	교육학(영어교육)석사			영 어 교 육	교육학(영어교육)석사	
	상 담 심 리	교육학(상담심리)석사			상 담 심 리	교육학(상담심리)석사	
	체 육 교 육	교육학(체육교육)석사			체 육 교 육	교육학(체육교육)석사	
	무 용 교 육	교육학(무용교육)석사			무 용 교 육	교육학(무용교육)석사	
	유 아 교 육	교육학(유아교육)석사			유 아 교 육	교육학(유아교육)석사	
	음 악 교 육	교육학(음악교육)석사			음 악 교 육	교육학(음악교육)석사	
	유 아 특 수 교 육	교육학(유아특수교육)석사			유 아 특 수 교 육	교육학(유아특수교육)석사	
	미 술 교 육	교육학(미술교육)석사			미 술 교 육	교육학(미술교육)석사	
	인 공 지 능	교육학(인공지능)석사			인공지능융합교육	교육학(인공지능융합교육)석사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3-1-1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00.00.)
(신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 (2023.00.00.))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총 장

총장
직속

비서실

LINC3.0
사업단

특성화
추진단

대학
입자리
본부

교육혁신본부
IR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역량개발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국제교류원
글로벌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외국어교육지원센터
공자아카데미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새만금
연구단

혁신
사업단

안전
센터

홍보실

대학
본부

교무처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기획처	기획예산팀
입학처	입학관리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무처	총무팀, 경리팀, 관리팀, 예비군대대

대학원

교학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소병병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과정), 직업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예술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과학과 〈박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글로벌비즈니스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사회정책경영학과, 소병병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조경건설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 화장품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과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
경영문화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가족복지학과, 미술치료학과, 다문화학과, 외식경영학과, 미용경영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응용행동분석학과, ESG경영학과
국방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군상담심리학과, 공공금융정책학과

단과
대학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제약공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재활상담학과, 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안학과, 물리치료학과
문화사회대학	군사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경영학부
과학기술대학	전기자동차공학부, 조경학과
식품과학대학	호텔와식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학대학	한의학과, 한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양대학	교양교육지원센터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융합학부〉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전공,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글로벌비즈니스언어융합전공, 스마트문화전시콘텐츠융합전공,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부속
기관

부속지원기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우식대의료원, 체육부, 종합실습장, 출판부, 도서관, 정보통신센터, 생활관, 전주한방문화센터, 보건진료센터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 교육연구원, 발달장애아교육원, 우영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이버평생교육원
부속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소, 아동복지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사회학연구소, 새만금연구소, 공학연구소, 다문화센터, 인지과학연구소, 태권도연구소, 김근태연구소, 융합문화콘텐츠연구소,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스마트융복합라이프케어연구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ESG국가정책연구소, 정원고교학연구소

학군단

진천부총장

대학본부	학사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 예비군중대
------	--

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생명과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박사과정〉 에너지전기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경영문화대학원	간호도시조경융합학과 상담심리학과

단과
대학

문화사회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소발행정책학과 경찰학과
과학기술대학	건축에너지융합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진천)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산학협력부총장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특성화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공공장비지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역혁신센터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
-------	--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총 장		총장 직속	비서실	LINC3.0 사업단	특성화 추진단	대학 입자리 본부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창업지원단	새만금 연구단	혁신 사업단	인권 센터	홍보실
							IR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역량개발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글로벌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외국어교육지원센터 공자아카데미	창업교육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대학 본부	교무처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기획처	기획예산팀											
대학원	입학처	입학관리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원	사무처	총무팀, 경리팀, 관리팀, 예비군대대											
	교학팀												
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과정), 직업재활학과, 직업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예술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과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대학원	경영문화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가족복지학과, 미술치료학과, 다문화학과, 외식경영학과, 미용경영학과, 사회정책학과, 응용행동분석학과, ESG경영학과											
	국방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군상담심리학과, 공공금융정책학과											
단과 대학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재활공학과, 아동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안학과, 물리치료학과											
	문화사회대학	군사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경영학부											
단과 대학	과학기술대학	전기자동차공학부, 조경학과											
	식품과학대학	호텔와식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단과 대학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단과 대학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한의학과											
단과 대학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양대학	교양교육지원센터											
단과 대학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융합학부>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전공,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글로벌비즈니스언어융합전공, 스마트문화전시콘텐츠융합전공,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부속 기관	부속지원기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우석대의료원 체육부, 종합실습장, 출판부, 도서관, 정보통신센터, 생활관, 전주한방문화센터, 보건진료센터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우영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이버평생교육원											
부속 연구기관	부속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소, 아동복지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새만금연구소, 공학연구소, 다문화센터, 인지과학연구소, 태권도연구소, 김근태연구소,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스마트융복합라이프케어연구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ESG국가정책연구소, 정원고교학연연구소											
	학군단												

진천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대학 본부	학사지원센터	산학협력단	
	행정지원센터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특성화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역혁신센터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	
대학원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생명과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박사과정> 에너지전기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경영 문화 대학원	태권도사조경부동신학과, 상담심리학과	
단과 대학	문화 사회 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 기술 대학	건축에너지환경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단과 대학	체육 과학 대학	생활체육학과	
	자율 전공 대학	자율전공학부(진천)	
단과 대학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5-1-2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현행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02조(교내장학금)에 의해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우석가족장학금’ 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대학정보공시 지침에 의거 위 대상자는 ‘교직원장학금’ 으로 지급하여야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02조(교내장학금) 규정 개정			
	현행		개정(안)	
	제102조(교내장학금) ①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7) 1. ~ 6. 생략 7. 교직원장학금 : <u>대학원에 재학 중인 본교의 교직원</u> (개정 2007.9.27., 2014.2.7., 2016.4.27.) 8. 우석가족장학금 : <u>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u> , 10년 이상 본교 재직 후 퇴직한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우석학원 법인 사무국·법인 산하기관·전북일보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개정 2007.9.27., 2014.2.7., 2014.5.22., 2016.4.27.) 9. ~ 16. 생략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8.29.)		제102조(교내장학금) ①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7) 1. ~ 6. 생략 7. 교직원장학금 : <u>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u> (개정 2007.9.27., 2014.2.7., 2016.4.27.) 8. 우석가족장학금 : (<u>삭제</u>) 10년 이상 본교 재직 후 퇴직한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우석학원 법인사무국·법인 산하기관·전북일보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개정 2007.9.27., 2014.2.7., 2014.5.22., 2016.4.27.) 9. ~ 16. 생략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8.29.)	
기대효과	• 대학정보공시 지침 준수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직제규정」, 「학칙」은 기획평가팀 주관 개최)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V)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V)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 없음		
첨부자료	1.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대학원위원회 회의자료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2조(교내장학금) ①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7) 1. ~ 6. 생략 7. 교직원장학금 : <u>대학원에 재학 중인 본교의 교직원</u> (개정 2007.9.27., 2014.2.7., 2016.4.27.) 8. 우석가족장학금 : <u>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u>, 10년 이상 본교 재직 후 퇴직한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우석학원 법인사무국·법인 산하기관·전북일보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개정 2007.9.27., 2014.2.7., 2014.5.22., 2016.4.27.) 9. ~ 16. 생략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8.29.)	제102조(교내장학금) ①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7) 1. ~ 6. 생략 7. 교직원장학금 : <u>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u> (개정 2007.9.27., 2014.2.7., 2016.4.27.) 8. 우석가족장학금 : <u>(단서 삭제)</u> 10년 이상 본교 재직 후 퇴직한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우석학원 법인사무국·법인 산하기관·전북일보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개정 2007.9.27., 2014.2.7., 2014.5.22., 2016.4.27.) 9. ~ 16. 생략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8.29.)
	<u>부 칙</u> <u>이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2-1-1 「우석대학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소관부서	역량개발인증센터		관련부서	교무학사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융합전공 상태 변경 (명칭 변경, 폐지) 및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학위 수여 명칭 개정			
관련근거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1항 • 교육혁신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상태 변경에 따른 학칙 제55조(학위수여) 학사학위증서 [별표3] 학사학위의 종류 추가 및 삭제			
	상태	수여학위	융합전공명	변동사항
	명칭변경	영유아발달치료학사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개정
	현행	건강기능식품학사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현행
	신규개발	체육학사	e스포츠융합전공	추가
	폐지	바이오정보시스템학사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현행*
	폐지	광고공학사	스마트문화전시콘텐츠융합전공	삭제
	*2023.1.6. 기준 교무학사팀 회신.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재학생 1명 존재하여 현행 유지			
기대효과	• 미래 신산업 수용에 대응하는 창의 융합형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형 전공 교육 강화를 통해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직제규정」, 「학칙」은 기획평가팀 주관 개최]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진행 예정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진행 예정		
첨부자료	1.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학위수여) (생략) ③학사학위의 종류는 별표3 과 같다. (개정 2013.6.25., 2014.8.25., 2016.5.27., 2017.2.27., 2017.5.24., 2018.4.6., 2019.3.1., 2019.4.11., 2020.2.28., 2020.8.27., 2021.1.14., 2022.1.27., 2022.12.16.) (생략)	제55조(학위수여) (생략) ③학사학위의 종류는 별표3 과 같다. (개정 2013.6.25., 2014.8.25., 2016.5.27., 2017.2.27., 2017.5.24., 2018.4.6., 2019.3.1., 2019.4.11., 2020.2.28., 2020.8.27., 2021.1.14., 2022.1.27., 2022.12.16., 2023.00.00.) (생략)
(신설)	부칙(학교법인우석학원 - (2023.00.00.)) 이 규정은 2023년 월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3] (개정 2022.12.16.)

학사학위의 종류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문 학 사	아동복지학과, 심리학과, 한국어학과, 영어과, 중국어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국제언어문화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아동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아동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가족복지전공)
경영학사	보건의료관리학과, 경영학과, 유통통상학부(유통비즈니스전공), 보건의료경영학과, 경영학부(경영전공), 스포츠마케팅학과
경제학사	유통통상학부(무역비즈니스전공), 경영학부(무역전공)
관광학사	호텔항공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관광학과, 관광학과
언론학사	광고이벤트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부, 미디어영상학과, 광고홍보이벤트학과
소방행정학사	소방행정학과
경찰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학과
법 학 사	법학과
군사학사	군사학과, 군사안보학과
공 학 사	계약공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국방기술학과, IT전자융합공학과, 소방방재학과, 보건의료정보공학연계전공, 디지털커머스연계전공, 스마트계약공학연계전공, 빅데이터물리치료연계전공, 빅데이터헬스케어연계전공, 인공지능경영연계전공, 디지털광고홍보연계전공, ICT생명과학연계전공, 국방정보융합연계전공, 전기자동차공학부(기계자동차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부(컴퓨터전공, AI융합전공),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토목재난안전공학과, 군사기술학과
이 학 사	식품영양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정보보안학과, 응용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수학교육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에코바이오학과, 조경학과, 생명과학과, 물리치료학과, 스마트농식품연계전공, 재활상담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생명영양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한의학사	한의학과
한약학사	한약학과
약 학 사	약학과
교육학사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음악학사	국악과
미술학사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현 행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체육학사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 (신설)
예술학사	공연예술뮤지컬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뮤지컬학과
스포츠관광학사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학사	영유아발달치료전공 (개정)
건강기능식품학사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스마트재난안전학사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바이오정보시스템학사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광고공학사 <삭제>	스마트문화전시콘텐츠융합전공 <삭제>
임상운동학사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학사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소방안전학사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학사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도시재생학사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교양학사 (신설 2022.6.24.)	교양학사트랙(신설 2022.6.24.)

개 정(안)

[별표 3] (개정 2022.12.16., 2023.00.00.)

학사학위의 종류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문 학 사	아동복지학과, 심리학과, 한국어학과, 영어과, 중국어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국제언어문화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아동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아동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가족복지전공)
경영학사	보건의료관리학과, 경영학과, 유통통상학부(유통비즈니스전공), 보건의료경영학과, 경영학부(경영전공), 스포츠마케팅학과
경제학사	유통통상학부(무역비즈니스전공), 경영학부(무역전공)
관광학사	호텔항공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관광학과, 관광학과
언론학사	광고이벤트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부, 미디어영상학과, 광고홍보이벤트학과
소방행정학사	소방행정학과
경찰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학과
법 학 사	법학과
군사학사	군사학과, 군사안보학과
공 학 사	계약공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국방기술학과, IT전자융합공학과, 소방방재학과, 보건의료정보공학연계전공, 디지털커머스연계전공, 스마트계약공학연계전공, 빅데이터물리치료연계전공, 빅데이터헬스케어연계전공, 인공지능경영연계전공, 디지털광고홍보연계전공, ICT생명과학연계전공, 국방정보융합연계전공, 전기자동차공학부(기계자동차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부(컴퓨터전공, AI융합전공),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토목재난안전공학과, 군사기술학과
이 학 사	식품영양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정보보안학과, 응용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수학교육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에코바이오학과, 조경학과, 생명과학과, 물리치료학과, 스마트농식품연계전공, 재활상담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생명영양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한의학사	한의학과
한약학사	한약학과
약 학 사	약학과
교육학사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음악학사	국악과
미술학사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개 정(안)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체육학사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 e스포츠융합전공 (신설)
예술학사	공연예술뮤지컬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뮤지컬학과
스포츠관광학사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학사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개정)
건강기능식품학사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스마트재난안전학사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바이오정보시스템학사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삭제>	<삭제>
임상운동학사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학사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소방안전학사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학사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도시재생학사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교양학사 (신설 2022.6.24.)	교양학사트랙(신설 2022.6.24.)

규 정 입 안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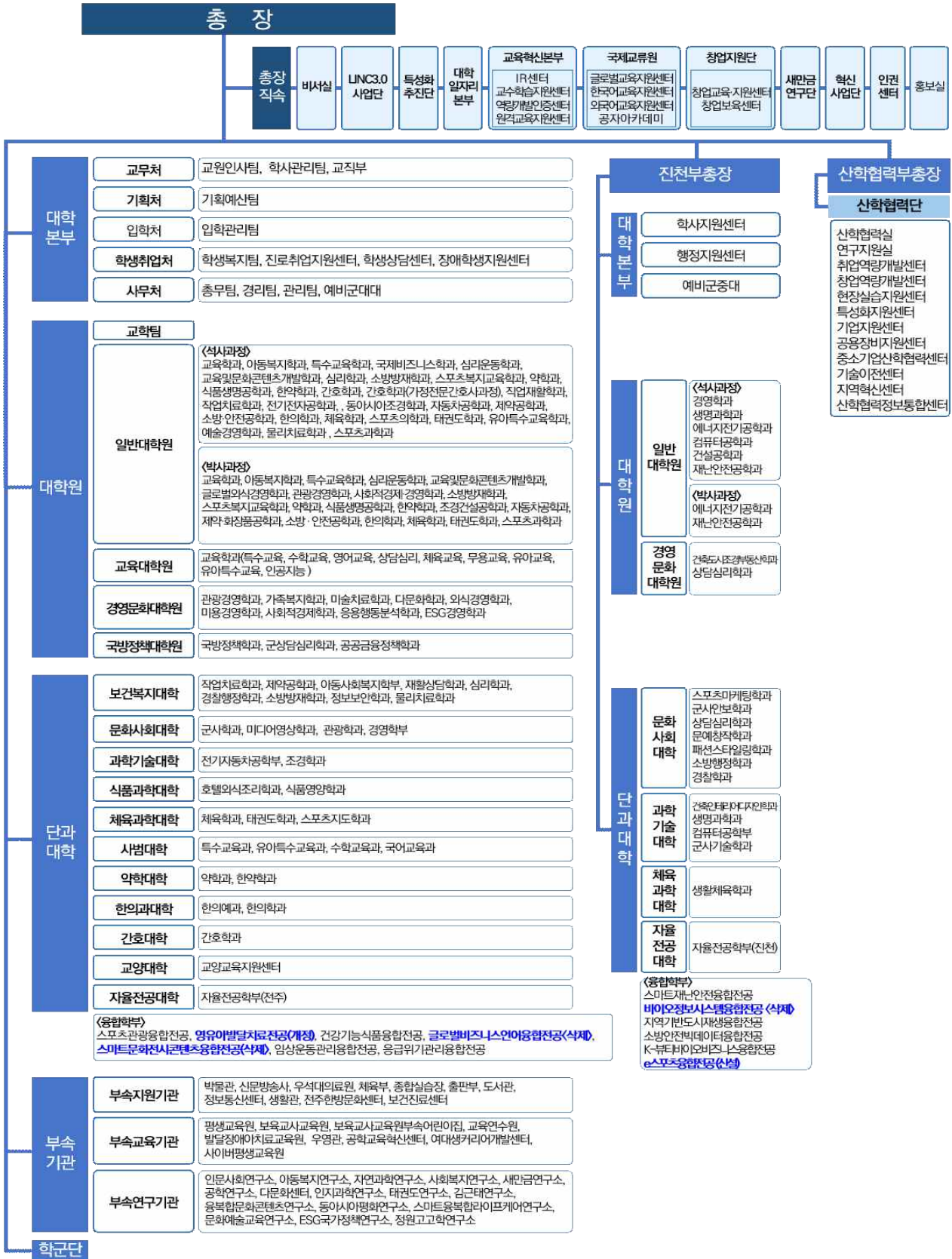
규정명	3-1-1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6조(기구표) (생략) 본교의 기구표는 <u>별표</u>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제36조(기구표) (생략) 본교의 기구표는 <u>별표</u>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u>2023.00.00.</u>) (생략)
<u>(신설)</u>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 (2023.00.00.))</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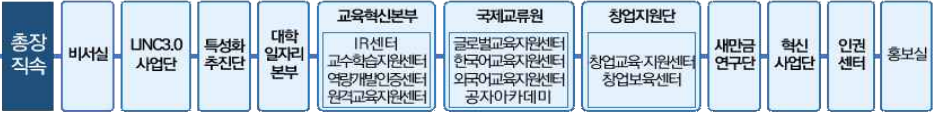
[별표] 기구표



개 정(안)

[별표] 기구표 (2023.00.00.)

총 장



대학 본부	교무처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기획처	기획예산팀
	입학처	입학관리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무처	총무팀, 경리팀, 관리팀, 예비군대대

대학원	교학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과정), 직업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소방 안전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예술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과학과 〈박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글로벌의식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사회작경제 경영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조경간설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 화정공학과, 소방 안전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과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
	경영문화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가족복지학과, 미술치료학과, 디문화학과, 외식경영학과, 미용경영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응용행동분석학과, ESG경영학과
	국방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군상담심리학과, 공공공공정책학과

단과 대학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제약공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재활상담학과, 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안학과, 물리치료학과
	문화사회대학	군사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경영학부
	과학기술대학	전기자동차공학부, 조경학과
	식품과학대학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한 의과대학	한 의예과, 한 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양대학	교양교육지원센터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융합학부〉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신설)

부속 기관	부속지원기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우석대의료원, 체육부, 종합실습장, 출판부, 도서관, 정보통신센터, 생활관, 전주한방문화센터, 보건진료센터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아치로교육원, 우영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시아버평생교육원
	부속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소, 아동복지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새만금연구소, 공학연구소, 다문화센터, 인지와학연구소, 태권도연구소, 김근태연구소,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스마트융복합라이프케어연구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ESG국가정책연구소, 정원고고학연구소

학군단

대학 과 부	진천부총장	학사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 예비군중대
	대학 원	일반 대학원, 경영 문화 대학원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과학 기술 대학, 체육 과학 대학, 자율 전공 대학

대학 원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생명과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경영 문화 대학원	〈박사과정〉 에너지전기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과학 기술 대학, 체육 과학 대학, 자율 전공 대학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 기술 대학	건축인테리어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 과학 대학	생활체육학과

대학 과 부	자율 전공 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신설)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과학 기술 대학, 체육 과학 대학, 자율 전공 대학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 기술 대학	건축인테리어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 과학 대학	생활체육학과

대학 과 부	자율 전공 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신설)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과학 기술 대학, 체육 과학 대학, 자율 전공 대학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 기술 대학	건축인테리어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 과학 대학	생활체육학과

대학 과 부	자율 전공 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신설)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과학 기술 대학, 체육 과학 대학, 자율 전공 대학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 기술 대학	건축인테리어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 과학 대학	생활체육학과

대학 과 부	자율 전공 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신설)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과학 기술 대학, 체육 과학 대학, 자율 전공 대학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 기술 대학	건축인테리어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 과학 대학	생활체육학과

대학 과 부	자율 전공 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신설)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과학 기술 대학, 체육 과학 대학, 자율 전공 대학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 기술 대학	건축인테리어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 과학 대학	생활체육학과

대학 과 부	자율 전공 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신설)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과학 기술 대학, 체육 과학 대학, 자율 전공 대학

대학 과 부	문화 사회 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 기술 대학	건축인테리어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 과학 대학	생활체육학과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2-1-1 「우석대학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5조(학위수여) (생략) ③학사학위의 종류는 <u>별표3</u> 과 같다. (개정 2013.6.25., 2014.8.25., 2016.5.27., 2017.2.27., 2017.5.24., 2018.4.6., 2019.3.1., 2019.4.11., 2020.2.28., 2020.8.27., 2021.1.14., 2022.1.27., 2022.12.16., <u>(신설)</u>) (이하 생략)	제55조(학위수여) (생략) ③학사학위의 종류는 <u>별표3</u> 과 같다. (개정 2013.6.25., 2014.8.25., 2016.5.27., 2017.2.27., 2017.5.24., 2018.4.6., 2019.3.1., 2019.4.11., 2020.2.28., 2020.8.27., 2021.1.14., 2022.1.27., 2022.12.16., <u>2023.00.00.</u>) (이하 생략)
<u>(신설)</u>	<u>부 칙</u> <u>이 개정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		학사학위의 종류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문 학 사	아동복지학과, 심리학과, 한국어학과, 영어과, 중국어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국제언어문화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아동복지전공)	문 학 사	아동복지학과, 심리학과, 한국어학과, 영어과, 중국어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국제언어문화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아동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아동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가족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아동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가족복지전공)
경영학사	보건의료관리학과, 경영학과, 유통통상학부(유통비즈니스전공), 보건의료경영학과, 경영학부(경영전공), 스포츠마케팅학과	경영학사	보건의료관리학과, 경영학과, 유통통상학부(유통비즈니스전공), 보건의료경영학과, 경영학부(경영전공), 스포츠마케팅학과
경제학사	유통통상학부(무역비즈니스전공), 경영학부(무역전공)	경제학사	유통통상학부(무역비즈니스전공), 경영학부(무역전공)
(신설)	(신설)	예술경영학사	경영학부(예술경영전공)
관광학사	호텔항공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관광학과, 관광학과	관광학사	호텔항공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관광학과, 관광학과
언론학사	광고이벤트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부, 미디어영상학과, 광고홍보이벤트학과	언론학사	광고이벤트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부, 미디어영상학과, 광고홍보이벤트학과
소방행정학사	소방행정학과	소방행정학사	소방행정학과
경찰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학과	경찰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학과
법 학 사	법학과	법 학 사	법학과
군사학사	군사학과, 군사안보학과	군사학사	군사학과, 군사안보학과

현행		개정(안)	
[별표 3]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		학사학위의 종류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공 학 사	제약공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국방기술학과, IT전자융합공학과, 소방방재학과, 보건의료정보공학연계전공, 디지털커머스연계전공, 스마트제약공학연계전공, 빅데이터물리치료연계전공, 빅데이터헬스케어연계전공, 인공지능경영연계전공, 디지털광고홍보연계전공, ICT생명과학연계전공, 국방정보융합연계전공, 전기자동차공학부(기계자동차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부(컴퓨터전공, AI융합전공),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토목재난안전공학과, 군사기술학과	공 학 사	제약공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국방기술학과, IT전자융합공학과, 소방방재학과, 보건의료정보공학연계전공, 디지털커머스연계전공, 스마트제약공학연계전공, 빅데이터물리치료연계전공, 빅데이터헬스케어연계전공, 인공지능경영연계전공, 디지털광고홍보연계전공, ICT생명과학연계전공, 국방정보융합연계전공, 전기자동차공학부(기계자동차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부(컴퓨터전공, AI융합전공),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토목재난안전공학과, 군사기술학과
이 학 사	식품영양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정보보안학과, 응용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수학교육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에코바이오학과, 조경학과, 생명과학과, 물리치료학과, 스마트농식품연계전공, 재활상담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생명영양학과	이 학 사	식품영양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정보보안학과, 응용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수학교육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에코바이오학과, 조경학과, 생명과학과, 물리치료학과, 스마트농식품연계전공, 재활상담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생명영양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한의학사	한의학과	한의학사	한의학과
한약학사	한약학과	한약학사	한약학과
약 학 사	약학과	약 학 사	약학과
교육학사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교육학사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음악학사	국악과	음악학사	국악과
미술학사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현행	개정(안)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여학위</th><th>학과, 전공 및 트랙</th></tr> </thead> <tbody> <tr> <td>체육학사</td><td>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td></tr> <tr> <td>예술학사</td><td>공연예술뮤지컬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뮤지컬학과</td></tr> <tr> <td>스포츠관광학사</td><td>스포츠관광융합전공</td></tr> <tr> <td>영유아발달치료학사</td><td>영유아발달치료전공</td></tr> <tr> <td>건강기능식품학사</td><td>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td></tr> <tr> <td>스마트재난안전학사</td><td>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td></tr> <tr> <td>바이오정보시스템학사</td><td>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td></tr> <tr> <td>광고공학사</td><td>스마트문화전시콘텐츠융합전공</td></tr> <tr> <td>임상운동학사</td><td>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td></tr> <tr> <td>K-뷰티바이오비즈니스학사</td><td>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td></tr> <tr> <td>소방안전학사</td><td>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td></tr> <tr> <td>응급위기관리학사</td><td>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td></tr> <tr> <td>도시재생학사</td><td>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td></tr> <tr> <td>교양학사 (신설 2022.6.24.)</td><td>교양학사트랙(신설 2022.6.24.)</td></tr> </tbody> </table>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체육학사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	예술학사	공연예술뮤지컬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뮤지컬학과	스포츠관광학사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학사	영유아발달치료전공	건강기능식품학사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스마트재난안전학사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바이오정보시스템학사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광고공학사	스마트문화전시콘텐츠융합전공	임상운동학사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학사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소방안전학사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학사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도시재생학사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교양학사 (신설 2022.6.24.)	교양학사트랙(신설 2022.6.24.)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여학위</th><th>학과, 전공 및 트랙</th></tr> </thead> <tbody> <tr> <td>체육학사</td><td>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td></tr> <tr> <td>예술학사</td><td>공연예술뮤지컬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뮤지컬학과</td></tr> <tr> <td>스포츠관광학사</td><td>스포츠관광융합전공</td></tr> <tr> <td>영유아발달치료학사</td><td>영유아발달치료전공</td></tr> <tr> <td>건강기능식품학사</td><td>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td></tr> <tr> <td>스마트재난안전학사</td><td>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td></tr> <tr> <td>바이오정보시스템학사</td><td>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td></tr> <tr> <td>광고공학사</td><td>스마트문화전시콘텐츠융합전공</td></tr> <tr> <td>임상운동학사</td><td>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td></tr> <tr> <td>K-뷰티바이오비즈니스학사</td><td>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td></tr> <tr> <td>소방안전학사</td><td>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td></tr> <tr> <td>응급위기관리학사</td><td>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td></tr> <tr> <td>도시재생학사</td><td>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td></tr> <tr> <td>교양학사 (신설 2022.6.24.)</td><td>교양학사트랙(신설 2022.6.24.)</td></tr> </tbody> </table>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체육학사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	예술학사	공연예술뮤지컬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뮤지컬학과	스포츠관광학사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학사	영유아발달치료전공	건강기능식품학사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스마트재난안전학사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바이오정보시스템학사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광고공학사	스마트문화전시콘텐츠융합전공	임상운동학사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학사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소방안전학사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학사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도시재생학사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교양학사 (신설 2022.6.24.)	교양학사트랙(신설 2022.6.24.)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체육학사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																																																												
예술학사	공연예술뮤지컬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뮤지컬학과																																																												
스포츠관광학사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학사	영유아발달치료전공																																																												
건강기능식품학사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스마트재난안전학사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바이오정보시스템학사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광고공학사	스마트문화전시콘텐츠융합전공																																																												
임상운동학사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학사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소방안전학사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학사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도시재생학사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교양학사 (신설 2022.6.24.)	교양학사트랙(신설 2022.6.24.)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체육학사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																																																												
예술학사	공연예술뮤지컬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뮤지컬학과																																																												
스포츠관광학사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학사	영유아발달치료전공																																																												
건강기능식품학사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스마트재난안전학사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바이오정보시스템학사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광고공학사	스마트문화전시콘텐츠융합전공																																																												
임상운동학사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학사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소방안전학사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학사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도시재생학사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교양학사 (신설 2022.6.24.)	교양학사트랙(신설 2022.6.24.)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2-1-1 「우석대학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절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제50조(교직과정) ①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직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평생교육사과정) ①평생교육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사 교과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평생교육사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제5절 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u>등</u> 제50조(교직과정) ①~② 현행과 동일 제51조(평생교육사과정) ①~② 현행과 동일 <u>제51조의2(학·석사 연계과정) 학·석사 연계 과정을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u> 부 <u> </u> 칙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2-1-1 「우석대학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절 교육과정과 이수학점	제1절 교육과정과 이수학점
제40조(어학연수 학점인정) ①방학 또는 휴학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입학 전 또는 입학 후 본교에서 실시하는 해외 어학연수를 이수한 신입생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24.) ③어학연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의2(경험학습학점제) ①성인학습자가 입학 전 정규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습득한 근로경험, 학습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경험학습학점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2.28.] <u>(신설)</u>	제40조(어학연수 학점인정) ①~③ 현행과 동일 제40조의2(경험학습학점제) ①~② 현행과 동일 <u>제40조의3(선이수프로그램학점제) ①신입생이 입학 전 본교에서 운영한 선이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u> <u>②선이수프로그램학점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u>
<u>(신설)</u>	<u>부 칙</u> <u>이 개정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0-0-0 「선이수프로그램학점제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선이수프로그램학점제운영규정 (안)

[제정 2023.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 학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이수프로그램학점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선이수프로그램학점제는 입학 전 본교의 선이수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본교 입학시 취득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인정제도이다.

제3조(프로그램 개발) ① 선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이수프로그램은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① 선이수프로그램 참여자는 고등학생 2, 3학년 학생으로 한다.

② 프로그램운영주체는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교양대학과 해당 학과(부)로 정한다.

③ 운영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학점인정) ① 선이수프로그램을 이수한 신입생이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점인정신청서를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한다.

② 인정학점은 전체 프로그램 이수시간 15시간 당 1학점으로 최대 3학점으로 제한한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0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2-1-15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무학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예비군 관련 공결은 법령상을 근거로 시행 중이었으나, 교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예비군법> * 5~6년차 지역예비군훈련에 적용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 1~4년차 동원훈련에 적용 -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 제93조의2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학교의 장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출석인정관련 규정에 예비군 관련 공결사항 명시		
기대효과	• 예비군 훈련 참석자의 공결사항 명시를 통한 예비군 공결의 체계화 구축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사 등 「직제규정」, 「학칙」은 기획평가팀 주관 개최)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V)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V)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 없음	
첨부자료	1.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8조(출석인정) ①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7.)		
	출석인정사유		기간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또는 이에 유사한 경우		7일 이내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3일 이내
	<u>(신설)</u>		<u>(신설)</u>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이내
	교육실습 중인 경우		실습기간
	졸업 예정자로서 공무원시험, 각종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 기타 취업에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 당일
	긴급 수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난치병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 발행 증빙서류를 첨부		14일 이내
	출산의 경우	본인	20일 이내
		배우자	10일 이내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		해당기간
개 정 (안)	제8조(출석인정) ①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7.)		
	출석인정사유		기간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또는 이에 유사한 경우		7일 이내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3일 이내
	<u>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u>		<u>훈련 당일</u>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이내
	교육실습 중인 경우		실습기간
	졸업 예정자로서 공무원시험, 각종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 기타 취업에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 당일
	긴급 수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난치병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 발행 증빙서류를 첨부		14일 이내
	출산의 경우	본인	20일 이내
		배우자	10일 이내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		해당기간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2-1-8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위원회) ①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u>산업체</u>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이상이 되도록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26.) ③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은 기획처장, 산학협력실장, <u>기획평가팀장, 예산조정팀장, 교무학사팀장</u>, 입학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0.) 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 운영계획 <u>수립에 관한 사항</u> <u>4. 계약학과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u> 5.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①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u>계약을 맺은 산업체</u>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하고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26., <u>2022.00.00.</u>) ③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은 기획처장, 산학협력실장, <u>기획예산팀장, 학사관리팀장</u>, 입학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0., <u>2022.00.00.</u>) 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 운영계획(<u>예산포함</u>)에 관한 <u>사항 (2022. 00.00.)</u> <u>4. <삭제></u> 5.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 신설)	제9조의2(학과운영위원회) ①<u>계약학과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운영위원회를 둔다.</u> ②<u>학과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하고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중소기업계약학과 학과운영위원회의 학교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u>

현행	개정(안)
	③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학과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학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과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4. 수업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보호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학과운영위원회는 제6항 1호 및 5호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9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①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과운영계획수립, 소속학생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주관대학, 참여기업, 참여학생 등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학과(부)의 장으로 한다. 단, 학교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3-1-2 「업무분장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예산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직제 개편(2022.12.28.)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관련근거 [관계법령]	•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직제규정」 개정(2022.12.28.)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제6조(기획평가팀) 및 제7조(예산조정팀)를 통합하여 기획예산팀으로 변경		
기대효과	• 대학 행정체계 규모의 적절성 확보 • 업무처리의 실무성 강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사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	
첨부자료	1.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 3 장 기 획 처	제 3 장 기 획 처
제6조(기획평가팀) 기획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6.28.)	제6조(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1. 대학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2.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업무	2.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업무
3. 기관 업무조정에 관한 업무	3. 기관 업무조정에 관한 업무
4. 정책·제도·연구기획에 관한 업무	4. 정책·제도·연구기획에 관한 업무
5. 제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업무	5. 제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업무
6. 학부 모집단위 및 정원조정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 2019.9.4.)	6. 학부 모집단위 및 정원조정에 관한 업무
7. <삭제 2019.9.4.>	7. 경영계획수립에 관한 업무
8. 경영계획수립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	8. 대학종합평가, 학문분야 등 평가에 관한 업무
9. 대학종합평가, 학문분야 등 평가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	9. 행정부서평가에 관한 업무
10. 행정부서평가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	10. 정보공시, 통계에 관한 업무
11. 정보공시, 통계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	11. 국책, 교책사업에 관한 업무
12. 국책, 교책사업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	12. 행정제안제도에 관한 업무
13. 행정제안제도에 관한 업무	13. 대학평의위원회에 관한 업무
14. (삭제 2013.8.2.)	14. 박물관 관리에 관한 업무
15. 대학평의위원회에 관한 업무	15. 체육부 관리에 관한 업무
16. 박물관 관리에 관한 업무	16. 예산에 관한 업무
17. 체육부 관리에 관한 업무	가. 예산 편성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8.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나. 예산의 통제에 관한 업무
	다.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
	라. 예산 관리에 관한 업무
	17. 기채 및 차관에 관한 업무
	18. 등록금 책정에 관한 업무
	19.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업무
	20. 각종 수수료 책정에 관한 업무
	21. 전주한방문화센터 관리에 관한 업무
	22. 감사에 관한 업무
	23. 입시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2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3.00.00]

현행	개정(안)
<u>제7조(예산조정팀) 예산조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6.28.)</u> <u>1. 예산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u> <u>가. 예산 편성 및 조정에 관한 업무</u> <u>나. 예산의 통제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u> <u>다.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u> <u>라. 예산 관리에 관한 업무</u> <u>2. 기채 및 차관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u> <u>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업무</u> <u>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업무</u> <u>5. 각종 수수료 책정에 관한 업무</u> <u>6. 전주한방문화센터 관리에 관한 업무</u> <u>7. 감사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u> <u>8. 입시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11.6.28.)</u> <u>9.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u>	<u>제7조(예산조정팀) <삭제 2023.00.00></u>
(신설)	<u>부칙</u> <u>이 개정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3-1-3 「위임전결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예산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직제 개편(2022.12.28.)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관련근거 [관계법령]	•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직제규정」 개정(2022.12.28.)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별표2] 기획평가팀 및 예산조정팀 위임전결 사항 통합		
기대효과	• 대학 행정체계 규모의 적절성 확보 • 업무처리의 실무성 강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사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	
첨부자료	1.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2023.00.00.)
(신 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2]

기획평가팀 (개정)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 발전계획	대학종합발전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2. 조직 및 편제	기구의 설치 및 조정	○		
	관련부서 통보 및 시행통제		○	
3. 기관 업무조정	기관 간 업무조정		○	
4. 정책·제도·연구기획	기획안 확정	○		
	관련부서 통보 및 시행통제		○	
5. 제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	제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	○		
	제규정 공포		○	
	제규정안 발의		○	
	교육부 및 법인보고, 법인 승인요청		○	
	제규정초안에 대한 실무협의			○
	제규정의 관리			○
6. 모집단위 및 정원 조정	교육부 승인요청	○		
	모집단위 및 정원조정 계획 수립	○		
	승인사항 해당부서 통보			○
7. 평가	대학, 학과(부), 대학원, 행정부서 평가계획수립	○		
	평가실시		○	
	평가보고서 발간		○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계획수립	○		
8. 통계	자료수집 및 작성			○
	각종통계 보고		○	
	통계연보 발간		○	
9. 행정제안제도	제안심사결과 확정	○		
	선정결과통보		○	
	신청안내			○

현 행

[별표 2]

예산조정팀 <삭제>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 예산업무	예산편성자료수집			○
	예산편성자료분석 평가		○	
	예산편성방침 확정	○		
	예산편성지침 시달		○	
	예산요구서 제출의뢰		○	
	예산요구서 접수 및 검토		○	
	부서별 예산요구내용 조정		○	
	예산안 작성		○	
	예산안 자문회의 및 이사회 상정	○		
	확정예산 및 집행계획 해당부서통보		○	
	예산수정 및 전용승인		○	
	예산 목간전용 및 예비비 사용	○		
2. 예산집행 통제	학과배정 예산	1,0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행정부서배 정 예산	2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공공요금, 연금, 건강보험, 제세공과금, 계약에 의하여 매월 지출되는 각종 경비			○
	집행 완결된 지출결의서 확인			○
	예산추산에 대한 통제부관리			○
	예산집행실적 분석, 평가보고		○	
3. 등록금	자료수집 및 분석		○	
	책정안 마련		○	
	등록금 책정	○		
4. 인건비	교직원보수, 제수당, 시간강의료 책정	○		
5. 기채 및 교육차관	기채 및 교육차관 계획수립	○		
6. 제증명수수료	자료수집 및 분석		○	
	발급수수료 책정		○	
7. 국고보조금	세부계획수립		○	
	예산배정		○	
	국고보조금 신청	○		
	집행결과보고		○	
8. 감사에 관한 업무	기본계획수립	○		
	감사반원위촉	○		
	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부정방지 대책 수립		○	

개 정(안)

[별표 2]

기획예산팀 (개정 2023.00.00.)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 발전계획	대학종합발전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2. 조직 및 편제	기구의 설치 및 조정	○		
	관련부서 통보 및 시행통제		○	
3. 기관 업무조정	기관 간 업무조정		○	
4. 정책·제도·연구기획	기획안 확정	○		
	관련부서 통보 및 시행통제		○	
5. 제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	제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	○		
	제규정 공포		○	
	제규정안 발의		○	
	교육부 및 법인보고, 법인 승인요청		○	
	제규정초안에 대한 실무협의			○
	제규정의 관리			○
6. 모집단위 및 정원 조정	교육부 승인요청	○		
	모집단위 및 정원조정 계획 수립	○		
	승인사항 해당부서 통보			○
7. 평가	대학, 학과(부), 대학원, 행정부서 평가계획수립	○		
	평가실시		○	
	평가보고서 발간		○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계획수립	○		
8. 통계	자료수집 및 작성			○
	각종통계 보고		○	
	통계연보 발간		○	
9. 행정제안제도	제안심사결과 확정	○		
	선정결과통보		○	
	신청안내			○
10. 예산업무	예산편성자료수집			○
	예산편성자료분석 평가		○	
	예산편성방침 확정	○		
	예산편성지침 시달		○	
	예산요구서 제출의뢰		○	
	예산요구서 접수 및 검토		○	
	부서별 예산요구내용 조정		○	
	예산안 작성		○	
	예산안 자문회의 및 이사회 상정	○		
	확정예산 및 집행계획 해당부서통보		○	
	예산수정 및 전용승인		○	
	예산 목간전용 및 예비비 사용	○		

개 정(안)

[별표 2]

기획예산팀 (개정 2023.00.00.)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1. 예산집행 통제	학과배정 예산	1,0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행정부서배정 예산	2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공공요금, 연금, 건강보험, 제세공과금, 계약에 의하여 매월 지출되는 각종 경비				○
	집행 완결된 지출결의서 확인				○
	예산추산에 대한 통제부관리				○
	예산집행실적 분석, 평가보고			○	
12. 등록금	자료수집 및 분석			○	
	책정안 마련			○	
	등록금 책정		○		
13. 인건비	교직원보수, 제수당, 시간강의료 책정		○		
14. 기채 및 교육차관	기채 및 교육차관 계획수립		○		
15. 제증명수수료	자료수집 및 분석			○	
	발급수수료 책정			○	
16. 국고보조금	세부계획수립			○	
	예산배정			○	
	국고보조금 신청		○		
	집행결과보고			○	
17. 감사에 관한 업무	기본계획수립		○		
	감사반원위촉		○		
	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부정방지 대책 수립			○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3-1-2 「업무분장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직제 개편(교무학사팀의 교원인사팀과 학사관리팀으로 분리)에 따른 규정 개정 필요		
관련근거 [관계법령]	•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직제규정」 개정(2022.12.28.)		
주요내용 [제 개정내용]	• 교무학사팀의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을 교원인사팀과 학사관리팀으로 분리 및 조정 • 제 규정의 교무학사팀 명칭을 업무에 따라 교원인사팀과 학사관리팀으로 일괄 변경		
기대효과	•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및 역할 명확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사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	
첨부자료	1.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교무학사팀) 교무학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무처장 직인관리에 관한 업무 2. 교무위원회, 교수회의, 학처장회의 및 학과(부)장 회의에 관한 업무 3. 학사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4. 대학요람 발간에 관한 업무 5. 교과과정 편성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7. 강좌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업무 8. 교원업적평가 연구 및 개발 9. 강의평가에 관한 업무 10. 교원의 인사, 복무, 교육에 관한 업무 가. 교원 인사정책 및 제도연구에 관한 업무 나. 교원 임용에 관한 업무 다. 교원연수에 관한 업무 라. 교원 국내외 파견 및 초청에 관한 업무 마. 교원수급계획에 관한 업무 바. 교원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사. 교원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아. 교원 복리후생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자. 교원 출장에 관한 업무 차. 교원 현황 통계 작성 및 보고 카. 강사 임용에 관한 업무 타. 학사조교 인사에 관한 업무 11. 국내 대학과의 교류협정에 관한 업무 12. 교내연구지원에 관한 업무 가. 교원 학술 연구 지원에 관한 업무 나. 교원 학술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다. 교원 국제 학술 및 교육 협력에 관한 업무 라. 교원 연구 업적지 발간에 관한 업무 마. 대학논문집 발간에 관한 업무 바. 연구업적 관리에 관한 업무 13.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업무 14. 편입생 모집 여석 산출에 관한 업무	제9조(교원인사팀) 교원인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원의 인사, 복무, 교육에 관한 업무 가. 교원 인사정책 및 제도연구에 관한 업무 나. 교원 임용에 관한 업무 다. 교원 국내외 파견 및 초청에 관한 업무 라. 교원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마. 교원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업무 바. 교원 복리후생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사. 교원 출강 및 출장에 관한 업무 2. 강사 인사, 복무, 교육에 관한 업무 3. 학사조교 인사, 복무, 교육에 관한 업무 4. 교원업적평가 연구, 개발, 운영에 관한 업무 5. 교원 재충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6. 교원학술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7. 연구업적 관리에 관한 업무 8. 교수회의, 교무위원회회의, 학처장회의 및 학과장 간담회, 교직원 워크숍에 관한 업무 9. 교원연구실 배정, 환경개선 등에 관한 업무 10. 교원노조 관련 업무 11.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12. 각종 위원회에 관한 업무 13.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4.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15.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3.00.00]

현행	개정(안)
15.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업무 16. 시간표편성 및 수업관리에 관한 업무 17. 계절수업에 관한 업무 18. 강의료지급에 관한 업무 19. 수강 신청에 관한 업무 20. 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 21. 성적 관리에 관한 업무 22.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23. 진급, 유급, 수료, 졸업에 관한 업무 24. 학적 조회 및 회보에 관한 업무 25. 학적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6. 휴학, 퇴학, 제적, 복학, 재입학, 전과에 관한 업무 27. 졸업자 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 28. 학부 졸업논문, 졸업시험 및 발표에 관한 업무 29. 사회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 30. 교외실습 및 특강에 관한 업무 31.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32. 실험실습에 관한 업무 가. 기자재운영위원회 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나. 500만원 이상 및 특정 품목의 기자재구입 품목선정에 관한 행정 업무 지원 33. <삭제 2014.10.1.> 34. <삭제 2014.10.1.> 35. <삭제 2012.9.13.> 36. 현장실습에 관한 업무 37. 교내 행사 주관에 관한 업무 가. 입학식 및 졸업식 나. 편입생의 오리엔테이션 38. 제증명신청발급, 민원, 병사업무 가. 제증명에 관한 업무(증명신청 및 발급서비스) 1) 교직원 제 증명서 및 신분증 2) 성적증명서(국, 영문) 3) 졸업(예정)/재학/제적/수료(예정)/휴학 증명서(국, 영문) 4) 학적부 사본	

현행	개정(안)
5) 교육비 납입증명서 6) 교직/부전공 이수 예정증명서 7) 대학원 제증명(국, 영문) 8) 등록금 고지서 재발급 9) 해외여행 추천서 발급 10) 장학금 (비)수혜 증명서 11) <삭제 2018.2.2.> 12) 예비군 편성확인서 나. 행정 서류 접수 및 처리 1) 휴학신청서 및 취소신청서 2) 복학신청서 3) 자퇴신청서 및 취소신청서 4) 학생증 발급 및 재발급 5) 주소변경 6) 예비군 대원 신고서 및 입영희망원 다. 현행과 같음 1) 강의 계획서, 시간표 조회 및 출력 2) 인터넷 정보검색 3) 성적조회 및 출력 라. 학사 및 병사 상담 마. 기타 서비스 1) 분실물, 습득물 관리 2) 우편물 관리(일반, 등기, 소포) 3) 기타 민원서비스와 관련되는 사항 바. <삭제 2013.8.2.> 39. 공학교육혁신센터, <삭제>,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삭제>, 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 관리에 관한 업무 40. 인쇄실 관리에 관한 업무 41.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신설 2013.8.2.)	
(조 신설)	<u>제9조2(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u> <u>1. 교무처장 직인관리에 관한 업무</u> <u>2. 학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u>

현행	개정(안)
	<u>3. 대학요람 발간에 관한 업무</u> <u>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u> <u>5.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u> <u>6. 강좌의 개설,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업무</u> <u>7. 수업관리에 관한 업무</u> <u>8. 강의평가에 관한 업무</u> <u>9. 강의료지급에 관한 업무</u> <u>10. 수강신청에 관한 업무</u> <u>11. 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u> <u>12. 성적 관리에 관한 업무</u> <u>13.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u> <u>14. 계절수업에 관한 업무</u> <u>15.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업무</u> <u>16. 편입생 모집 여석 산출에 관한 업무</u> <u>17.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등에 관한 업무</u> <u>18. 진급, 유급, 수료, 졸업에 관한 업무</u> <u>19. 학적 관리에 관한 업무</u> <u>20. 학적 변동에 관한 업무</u> <u>21. 현장실습에 관한 업무</u> <u>22. 입학식 및 졸업식에 관한 업무</u> <u>23. 제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업무</u> <u>24. 국내대학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u> <u>25.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아 치료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부속어린이집 관리에 관한 업무</u> <u>26.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업무</u> <u>27.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u> <u>28. 각종 위원회에 관한 업무</u> <u>29.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u> <u>[본조 신설 2023.00.00]</u>
	<u>부칙</u> <u>이 개정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3-1-3 「위임전결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부서간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직제 개편(교무학사팀의 교원인사팀과 학사관리팀으로 분리) 및 위임전결 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필요		
관련근거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위임전결규정을 교원인사팀과 학사관리팀으로 분리하고 업무분장규정 개정 에 따라 조정		
기대효과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및 역할 명확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 「직제규정」, 「학칙」은 기획평가팀 주관 개최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O)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 없음	
첨부자료	1.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2]				
교무학사팀 (개정)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 회의	교수회의, 학처장회의 및 학과(부)장 회의에 관한 업무	○		
	회의 자료요청 및 정리		○	
2. 학사계획	자료수집 및 정리			○
	학사계획 수립		○	
	학사계획 통보		○	
	학사업무 질의 및 회답			○
3. 대학 요람제작	편집위원 위촉		○	
	자료수집 및 정리			○
	발간 및 배포		○	
4.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수립	○		
	교육과정 편성 및 개정(교양 및 전공)		○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	
5. 강좌개설 및 폐지	강좌개설		○	
	담당교수배정		○	
	폐강처리		○	
	강좌개설 확인 및 변경		○	
	강의계획서 인쇄 및 배부		○	
6. 수업관리	의무시간확정	○		
	결강, 보강			○
	교수타교출강 승인		○	
	당일 수업시간 변경			○
	특별강좌 실시		○	
	수업상황통제		○	
	학생출석 관리 및 수업공결처리			○
	교외실습 및 특강		○	
	계절수업		○	
	야간학과 수업관리		○	
7. 교원 업적평가 및 관리	업적평가	○		
	업적자료검토		○	
	업적물 및 관련자료 정리			○
8. 강의평가	강의평가 계획수립		○	
	강의평가 결과 통보		○	
9. 교원인사 및 복무	승진임용자 및 재임용자 제청	○		
	호봉획정		○	
	교원보직 임면 제청	○		
	휴직, 복직, 퇴직	○		
	인사발령통지			○
	발령대장 정리, 보관			○
	인사카드작성, 정리, 보관			○
	재임용기간만료 통지		○	

현행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0. 교원신규채용	재임용후보자 명부작성		○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의뢰			○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결과보고		○	
	교원정원조정안 작성	○		
	신규채용공고		○	
	서류접수 및 심사		○	
11. 교원 및 학사조교 교육훈련	신규 임용자 선정 및 제청	○		
	교육훈련계획 및 일정수립	○		
	교육훈련 개최 통보			○
	교육훈련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		○	
	해외연수파견 대상자 선정	○		
	해외연수파견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		○	
12. 교원파견, 초청	파견 및 초청 신청		○	
	파견 및 초청교원 선정	○		
	선정통보		○	
	진행상황보고			○
13. 교원인력수급	자료수집, 분석, 평가		○	
	실무협의 및 협조			○
	계획수립	○		
14. 교원 훈·포상	공적조서 작성		○	
	훈·포상자 선정 및 포상	○		
	장기근속자 표창	○		
15. 교원징계	교원 징계	○		
	교원 징계에 따른 경위보고		○	
	교원징계위원회 개최 품의		○	
	징계 결과보고 및 조치	○		
	징계 결과 관련부서 통보		○	
16. 교원재충전프로그램	서류접수 및 심사		○	
	안식년 및 연구년 교수선정	○		
17. 교원현황	통계작성 및 보고		○	
18. 강사	위촉 및 해임	○		
	적부심사		○	
	인사자료 정리 및 보관			○
19. 학사조교인사	조교임용 제청	○		
	인사발령통지			○
	인사카드 정리 및 보관			○
20. 교내연구지원	연구비지원신청		○	
	연구비 지원과제선정	○		
	지원과제 선정 통보		○	
	중간보고, 결과보고		○	
	연구계획변경		○	
	과제수행 제한결정	○		
	과제수행 제한통보		○	
	연구비 지급		○	

현행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연구계(협)약 체결		○	
	교원의 교육추천		○	
	교수 사회봉사 업무지원		○	
	간행물 발간계획		○	
	간행물 자료수집, 정리			○
	간행물 배부			○
21. 정원관리 및 병사	학생정원관리	○		
	병사관계 변동			○
22. 부전공 및 복수전공·연계전공 등	신청접수			○
	이수승인		○	
	교과과정 기본이수 영역 확정(학부)		○	
23. 시간표 편성	강의 및 시험시간표 편성		○	
	시간표 통보			○
	강의실, 실험실 배정		○	
24. 계절수업	운영계획 수립	○		
	계절수업 진행			○
	계절수업 결과 보고		○	
25. 강의료	분반, 합반, 대단위강의료 청구		○	
	강의료청구		○	
26. 수강신청	기본계획수립		○	
	수강신청 및 변경			○
27. 시험관리	시험문제 및 답안지 관리			○
	채점표 관리			○
	졸업논문, 종합시험, 실기발표		○	
	시험감독변경			○
	입시시험관리			○
				○
28. 성적관리	성적표 정리, 보관			○
	성적기록 및 확인			○
	성적정정		○	
	성적경고		○	
29. 졸업, 진급, 유급, 수료	사정자료준비		○	
	대상자확정	○		
	확정결과통보		○	
	졸업대장 및 증서			○
30. 학적관리	학적부작성			○
	학적부관리 및 보관			○
	학적정정		○	
	학적조회 및 회보			○
	편입생 인정학점처리		○	
	학번배정		○	
31. 학적변동	퇴학, 제적	○		
	재입학, 전과		○	
	복학, 휴학, 휴학취소, 자퇴, 자퇴취소			○

현행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학적변동자 통보			○
32. 실험실습기자재구입계획	실험기자재 구입계획 수립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	
33. 현장 및 창업실습	실습계획수립		○	
	실습결과보고		○	
34. 행사	입학식 및 졸업식 계획수립		○	
	입학식 및 졸업식 진행		○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35. 제증명신청발급, 민원, 병사업무	강사경력증명서 발급			○
	학적, 성적관련증명 발급			○
	증명발급 수수료관리			○
	학적 및 성적 열람			○
	변동사항 전산처리			○
	분실물 접수, 처리			○
	전산 프로그램 개발요청			○
	신분증 발급			○
	재직, 경력증명서 발급			○
	제증명발급(교직원 관련 전반)			○
36. 소관 부속교육기관 운영	각 소속기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		
	사업계획			○
	주요업무추진 및 조정			○
	연중행사 및 교육계획			○
36. 인쇄실	인쇄실 관리			○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안)				
[별표 2]				
교원인사팀 (개정 2023.00.00.)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 교원 인사, 복무, 교육	승진임용자 및 재임용자 제청	○		
	호봉확정		○	
	교원보직 임면 제청	○		
	휴직, 복직, 퇴직	○		
	인사발령통지			○
	발령대장 정리, 보관			○
	인사카드작성, 정리, 보관			○
	재임용기간만료 통지		○	
	재임용후보자 명부작성		○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의뢰			○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결과보고		○	
가. 교원인력수급	자료수집, 분석, 평가		○	
	실무협의 및 협조			○
	계획수립	○		
나. 교원임용	교원정원조정안 작성	○		
	채용공고		○	
	서류접수 및 심사		○	
	임용자 선정 및 제청	○		
다. 교원 국내외 파견 및 초청	파견 및 초청 신청		○	
	파견 및 초청교원 선정	○		
	선정통보			○
	진행상황보고			○
마. 교원 상훈 및 징계	공적조서 작성		○	
	훈포상자 선정 및 포상	○		
	장기근속자 표창	○		
	교원 징계	○		
	교원 징계에 따른 경위보고		○	
	징계 결과보고 및 조치	○		
	징계 결과 관련부서 통보		○	
바. 교원 복리후생제도	계획안 수립	○		
	운영			○
사. 교원 출강 및 출장	출강 승인	○		
	출장 승인		○	
2. 강사	위촉 및 해임	○		
	적부심사		○	
	인사자료 정리 및 보관			○

개 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3. 학사조교인사	조교임용 제청	○		
	인사발령통지			○
	인사카드 정리 및 보관			○
4. 교원업적평가	업적평가 기준 마련 및 변경	○		
	업적평가 시행		○	
	업적평가 결과 통보			○
5. 교원재충전프로그램	서류접수 및 심사		○	
	교수선정	○		
6. 교내연구지원	연구비 지원 계획 수립	○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		○	
	지원과제 선정 통보			○
	연구비 지급			○
	결과보고		○	
	연구계획변경		○	
	과제수행 제한결정	○		
	과제수행 제한통보		○	
7. 연구업적 관리에 관한 업무				
8. 교수회의, 교무위원회, 학처장회의, 학과(부)장 회의, 교직원 워크숍 등	계획안 수립		○	
	운영			○
9. 교원연구실 배정, 환경개선	신청 접수 및 처리			○
10. 교원노조 관련 업무				
11. 각종 통계	통계 작성 및 회신			○
12. 위원회	위원 위촉	○		
	위원회 운영 및 결과 보고		○	
13. 정부지원사업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운영			○
	사업 결과 보고		○	
14. 교육훈련	계획안 수립		○	
	운영			○
	결과 보고		○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안)				
[별표 2]				
학사관리팀 (신설 2023.00.00.)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 교무처장 직인관리	교무처장 직인 및 사용대장 관리			○
2. 학사계획	자료수집 및 정리			○
	학사계획 수립		○	
	학사계획 통보		○	
	학사업무 질의 및 회답			○
3. 대학 요람제작	자료수집 및 정리			○
	발간 및 배포		○	
4. 전공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수립	○		
	교육과정 편성 및 개정		○	
	교육과정 운영			○
5.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	
6. 강좌 개설, 폐지 및 변경	강좌개설		○	
	담당교수배정		○	
	폐강처리		○	
	강좌개설 확인 및 변경		○	
7. 수업관리	의무시간확정	○		
	결강, 보강			○
	당일 수업시간 변경			○
	특별강좌 실시		○	
	수업상황통제		○	
	학생출석 관리 및 수업공결처리			○
	교외실습 및 특강		○	
8. 강의평가	강의평가 계획수립		○	
	강의평가 결과 통보		○	
9. 강의료	분반, 합반, 대단위강의료 청구		○	
	강의료청구		○	
10. 수강신청	기본계획수립		○	
	수강신청 및 변경			○
11. 시험관리	시험문제 및 답안지 관리			○
	채점표 관리			○
	졸업논문, 종합시험, 실기발표		○	
	시험감독변경			○
	임시시험관리			○
12. 성적관리	성적표 정리, 보관			○
	성적기록 및 확인			○
	성적정정		○	
	성적경고		○	
13. 학점인정	기준 수립		○	
	운영			○
14. 계절수업	운영계획 수립		○	
	운영			○

개 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운영 결과 보고		○	
15. 정원관리	학생정원관리	○		
16. 편입학 모집 여석	여석 산출			○
17. 부전공, 복수전공 등	신청접수			○
	이수승인		○	
	교과과정 기본이수 영역 확정(학부)		○	
18. 진급, 유급, 수료, 졸업	사정자료준비		○	
	대상자확정	○		
	확정결과통보		○	
	졸업대장 및 증서			○
19. 학적관리	학적부작성			○
	학적부관리 및 보관			○
	학적정정		○	
	학적조회 및 회보			○
	편입생 인정학점처리		○	
20. 학적변동	퇴학, 제적	○		
	재입학, 전과		○	
	복학, 휴학, 휴학취소, 자퇴, 자퇴취소			○
	학적변동자 통보			○
21. 현장실습	실습계획수립		○	
	실습결과보고		○	
22. 입학식 및 졸업식	행사 계획 수립		○	
	진행		○	
23.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증명서 발급			○
	증명발급 수수료관리			○
	제증명발급(교직원 관련 전반)			○
24. 국내대학과의 교류협력	계획(안) 마련	○		
	협약식 진행			○
25. 부속교육기관 관리	주요업무 조정		○	
26. 정부지원사업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운영			○
	사업 결과 보고		○	
27. 각종 통계	통계 작성 및 회신			○
28. 위원회	위원 위촉	○		
	위원회 운영 및 결과 보고		○	